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472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1호의 ‘청년’에 대한 정의가 안 제2조제2호의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연령 범위와 상충되므로 ‘청년’의 정의를 삭제하고,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에 관한 정의를 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2조).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청년창업자’와 ‘예비청년창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창업자”를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 기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 기업 대표자를 말한다.</p> <p>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p> <p>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p> <p>① ----- 창업자-----</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p> <p>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p> <p>-----</p> <p>-----</p> <p>-----</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창업자”를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lt;신 설&gt;</p>	<p>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② (현행과 같음)</p>